

BAD NEWS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1> 허위·과장·왜곡의 제목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우교수,
서울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건 심리를 하다보면, 현재 미디어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단면과 직접 맞닥뜨리곤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문명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는 미디어 혁명, 하지만 그 역풍으로 불고 있는 '사실의 실종'이나 '저널리즘의 붕괴'를 말해주는 것들이다.

이런 기사제목들이 있다.

- Ⓐ [단독] 수도권매립지 0000 cc “부킹 뒤통 거액 비자금 조성”
- Ⓑ [단독] 00투자 자문 ‘허위광고’ 징계, 00증권 불똥 ... 투자자 “분쟁조정신청”

둘 다 중재위가 올해 처리한 사건의 관련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 두 기사의 본문내용을 보면, 위 제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의 경우, 기사 본문은 해당업체의 이런저런 비리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은 없다. ‘기사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제목으로 뽑았다? 그것도 중대한 비리라는 핵심내용으로?’

이 제목은 보도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을 보면 ‘①제목의 원칙에서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방송이나 인터넷의 보도윤리 역시 신문윤리와 거의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미디어역사상 먼저 출현한 신문윤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사 제목이 기사본문의 표현 일점일획까지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가령, 한국 축구대표팀이 X라는 국가 대표팀과의 A매치에서 4-0으로 대승했다는 기사내용이 있다고 치자. 이럴 때 기사제목에 ‘한국축구, X격침’ 또는 ‘X 완파’라고 뽑았는데, 기사본문에 그와 똑같은 표현이 없다해서 이 제목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축구기사 제목은 본문의 맥락을 그대로 요약해 반영했기 때문에 보도윤리상 제목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사 제목은 과장이나 왜곡을 넘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과장이나 왜곡도 심하면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이 경우는 당연히 정정의 대상이 된다.

Ⓑ기사 제목을 보자. 「투자자 “분쟁조정신청”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00투자자문과 계약을 맺었던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및 허위 수수료정보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제목처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개념상 하늘과 땅 차이다. 흔히 우리가 “아하고 ‘어’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심한 과장이나 왜곡을 넘어 허위라고 할 수 있다.

위 기사 제목들은 보도윤리상 따질게 더 있다.

우선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의 전문을 위반하고 있다.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또 이 준칙의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도 위반했다. 이 조항은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 기사에 대해 해당 매체의 편집기자들은 취재부서에서 출고된 기사본문 내용과는 다른 제목을 달았다. 말하자면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목에 반영한 것이다.

편집기자들에게는 제목을 와닿게, 그리고 돋보이게 뽑는 일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과장과 왜곡, 나아가 허위까지 발생한다. 신문과 지상파방송, 그리고 뉴스통신 등 소수의 레거시 미디어들만 활동하던 시절에도 제목의 과장과 왜곡은 심심찮게 발생했다. 제목이 갖는 원초적 운명이라고도 하겠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독자나 유저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다.

위 두 기사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허위제목을 단 데 이어 [단독]이라는 핏말까지 앞세웠다. 단독이라면, 쉽게 말해서 다른 매체가 보도하지 않은 기사를 혼자 보도한다는 뜻이고, 특종이라면 혼자 보도한 기사를 다른 매체가 받아서 보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독자나 유저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왜곡·허위 제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독'이라는 핏말까지 동원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제작년의 일로 기억한다. 검찰의 대형사건 수사상황 속보를 전하는 어느 방송의 화면에 자막이 떴다. [단독]이라는 핏말과 함께 뜬 자막내용은 조사 도중 외부식당에서 백반 식사가 배달됐다는 내용이었다. 짜장면이 배달됐다고 잘못 보도한 매체도 있으나 사실은 백반이 배달됐다는 '엄청난(?)' 단독보도였다.

앞서 서술한대로 과장과 왜곡은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도 많았으며 그것은 제목의 원초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초점은, 생산·제작·공급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다매체가 급증한 가운데 생존경쟁이 치열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제목의 '분장' 역시 극도로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제목의 문제도 주로 이같은 '수익성'에서 비롯한다.

몇 해 전 일간지 편집부장들을 초청한 세미나 자리에 나온 어느 매체 부장의 고백은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었다. 일간지들은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일 외에 종이신문에 나간 뉴스를 중심으로 인터넷판을 새로 제작한다(인터넷 신문들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온라인 뉴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낮에 종이신문 편집을 했던 기자가 당직 순서에 따라 그날 저녁 온라인 뉴스까지 편집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날 담당국장이 "인터넷쪽의 수입은 당신 손에 달려있어!" 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독자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제목을 잘 뽑아 클릭수를 높이려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매체의 종이와 인터넷에 같은 기사가 실리는데도 제목은 거의 다르게, 즉 인터넷판의 제목이 더 선정적으로 나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편집기자들은 언제나 보도윤리 경계선의 담장 위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일한다는 설명이었다.

현실을 대변하듯, 어느 학자는 오늘날의 세계를 두 가지 코드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그것



이 '경제'와 '미디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로 말할 것 같으면, '디지털 자본주의의 대표적 모델'이며 그 생태계에서 '클릭수는 곧 돈'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도, 사실이 검증되지 않거나, 사실이 의견과 구분되지 않아 결국 사실이 실종되고 저널리즘이 붕괴하는 현상도, 주요인은 수익성 즉 돈이다.

수익성 말고 한 가지 큰 원인이 더 있다. 바로 (진영논리 등의) 편향성이다. 미디어 생태계의 대전환 이래 저널리즘이 전반적으로 붕괴하면서 제목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보도도 급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를 진행하면서 그 배경을 확인해보면 제목의 원칙을 알고는 있지만, 수익성 등의 이유로 선정적 제목을 뽑느라 그리된 사례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매체 담당자들이 그 원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한 경우도 의외로 자주 나타난다.

미디어 생태계의 급변 이후 갈수록 보도윤리를 잘 지키지 않는 현상은 레거시 미디어나 신생 미디어나 크게 보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원칙을 등한시하는 매체의 상당수는 인터넷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하는 사건들은 우선 양적 측면에서 인터넷 매체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의 77.2%에 달한다. 미디어 생태계에서 인터넷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매체의 팽창은, 그 1차적 시점으로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2016년 현재의 위헌 결정이 중요한 기점이다. 당시 현재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해 인터넷 매체의 수는 6,090개였으나 불과 5년 뒤 10,314개로 급증했다.

그 이전까지 일각에서는 이 규제가 인터넷 언론매체의 보도와 시장 양면에서 무질서를 어느 정도 미리 제어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는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 이후, 지자체에 등록하는 데에 거의 제한이 없어진 인터넷 매체는 나날이 늘어나 2021년이 가기 전에 1만 개를 넘었다.

이들 인터넷 매체 중에는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곳도 많고, 기자의 수 등 보도체제의 규모, 보도내용의 질적 수준에 각각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 매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분야별로 방대한 양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과연 그 체제와 인력으로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들 매체의 기사중에는 통신 기사나 타 매체의 기사를 일부만 수정해 올리는 사실상의 표절 기사가 상당량인 곳이 많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기사 유희설'을 말하기도 한다. '유희'를 거듭하는 뉴스까지 더해 우리 미디어 생태계는 뉴스의 홍수사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내의 모든 매체가 하루동안 생산, 유통하는 뉴스가 6~7만 개쯤 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상의 표절 기사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국내 일일 뉴스 생산량 추정치는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우후죽순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매체들, 더욱 이들중 기사 표절을 능사로 아는 곳이라면 그 종사자들이 보도행위의 기본이자 상식인 보도윤리를 체득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저널리즘의 골격과 같다. 실천요강 중 '제목의 원칙'이나 '표절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일은 매체들이 일상적으로 어기는 윤리규정중 일부일 뿐이다. 많은 매체들이 이같은 원칙 외에도 반론의 기회, 미확인보도 명시, 보도자료 검증, 선정보도 금지, 자살보도 주의, 피의사실보도에 대해 규정한 조항을 다반사로 어기고 있다. 더욱이 많은 매체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보도윤리를 잘 모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을 최근 3년간의 권리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96.4%로 압도적이다. 그 다음으로 초상권침해, 재산상 손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같은 침해유형들을 보도문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바로 윤리규정(또는 관련법규)을 위반하는 내용들이다.

지금까지, 통계를 바탕으로 보자면 신생 인터넷 매체는 갈수록 크게 늘어났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 수도 급증했다. 그만큼 사건 관련 보도들이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매체가 늘어나는데 비해, 또 그만큼 유통되는 뉴스가 많아지는데 비해 저널리즘의 수준은 이와 반비례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한동안 여야 정당이 국회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가동,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중재위원회 정원 증원',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요건 확대' 등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최근 활동을 마무리 했다. 국회 특위는 앞으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위가 재가동한다 하더라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현안을 다시 조정하는게 좋겠다.

실사 특위가 재가동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여야 정당은 신생·소규모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고, 저널리즘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사후 보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와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를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대책으로 확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준은 아직 매우 미미한 단계에 처해있다.

우리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론개혁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공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삼고 민간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인터넷 매체에 대해 보도윤리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들이 제목의 원칙같은 보도윤리를 더 준수하게 되고 이로써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